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1. 6. 21.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1년 6월 7일

○ 회부일자 : 2001년 6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1. 6. 15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홍 기)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의 개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써,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시 공유재산대부 요율인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행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시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 시 위탁계약에 포함토록 명시.

○ 재산담당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항 폐지(제6조)

영 제80조의2 규정에 공유재산담당 공무원에게 예산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와 상충되는 규정 정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조항 신설(제7조제2항)

영 제78조제2항 신설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의 신설로 공유재산심의회 대상 신설.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지역 조정(제19조의3)

대상지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적용.

○ 매각대금 분할납부 일부조항 폐지 및 용어정비(제22조제1항)

도지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 매각 시 분할납부 조항은 한시규정(2000.12.31)으로 되어 있어 이를 삭제.

○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대금 분할납부이자 조정(제22조제4항)

- 현행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은 영 제10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

-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하여 매각한 때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여 영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 규정.
-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제2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사용료율·대부료율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탄력요율 조정(1000분의 50 → 1000분의 50이상, 1000분의 25 → 1000분의 25이상 등)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사용요율 신설(제23조제10항)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인구집중시설이 지방(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 신축시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함.
-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 폐지(제23조의2)
영 제100조의5(대부·사용료·매각대금의 체감)의 도입(2000.10.20 개정)으로 상충되는 조항 삭제.
-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 산출기준 신설(제25조제2항)
 - 2층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
 -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공용면적 포함)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

-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제도 도입(제25조의2)
 - 복합공공시설물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에 한해 적용.
 -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유리한 때와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적용.
 - 전세금 산출은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
 -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도 재무회계규칙 준용.
-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적용(제28조)
 - 영 제100조 제6항·제7항의 매각대 연체이자 적용방식을 사용료·대부료·변상금에도 적용
 - 조례 제22조 제1항 제4호가 삭제되어 조문정리 하였고 새로 국민 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이자부담 경감 조항 신설.
- 변상금 청문제도 신설(제28조의2)
 -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 사전예방 목적 신설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준용).
 - 변상금 부과·징수시 사전통지서 발송.
 - 의견서 제출 및 변상금 분할 납부시 분할납부신청서 제출.
- 분할매각 규정 명문화(제39조의2)

제5항 제3호의 1981. 4. 30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를 포함하여 분할 매각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과 형평을 기하고 분할매각을 명문화.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2000. 10. 20)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준칙의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부 요율을 대폭 인하하고,

전세금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처리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 제23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제25조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이 없는 바 이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일반시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군지역은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제11조제1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제1항·제2항중 “사용허가”를 각각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재산”을 각각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며, 동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중 “사용허가”를 각각 “사용·수익허가”로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로 한다.

제15조중 “사용허가부”를 “사용·수익허가부”로 한다.

제19조의3제4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6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잠중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중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중 “1000분의 40”을 “1000분의 40이상”으로 하며, 동조 제6항중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입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⑩도지사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2.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3중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임대료·대부료”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로 한다.

제25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 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도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1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초과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중 “한다”를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 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지사가 제23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제3항중 “하천법 제25”를 “하천법 제33조”로 하고, 동조 제5항제3호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등 잔여면적도 포함)”을 “(건물바닥면적

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으로, 단서부분중 "매각"을 "분할매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p>		<p>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③(생략)</p> <p>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하는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2. 재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p> <p>⑤(생략)</p>	<p>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③(현행과 같음)</p> <p>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⑤(현행과 같음)</p>
<p>제7조(도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도조정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p> <p>2. <삭제 '99. 5.31></p> <p>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7조(도공유재산심의회) ①----- ----- ----- ----- -----</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p> <p>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p> <p>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p> <p>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현행	개정안
<p>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일반시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은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p>제11조(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②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시·광역시지역 : 30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p>제11조(관리 및 처분) ①----- -----행정재산·보존재산----- ----- -----</p> <p>② <삭 제></p> <p>③ <삭 제></p>

현행	개정안
<p>2. 일반시지역 : 600제곱미터이하 토지 3.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 : 900제곱미터이하 토지 4. 시가 1천만원이하의 기타재산 ④(생략)</p>	<p>④(현행과 같음)</p>
<p>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코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u>사용허가</u>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주어야 한다.</p> <p>②행정재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u>사용허가</u>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생략) 	<p>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 <u>사용·수익허가</u> ----- ----- ----- -----</p> <p>②행정재산·보존재산 ----- ----- <u>사용·수익허가</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현행과 같음)
<p>제13조(사용허가 기간) 행정재산의 <u>사용허가</u>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u>사용허가</u>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개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p>	<p>제13조(사용·수익허가 기간) 행정재산·보존재산의 <u>사용·수익허가</u> ----- ----- <u>사용·수익허가</u> ----- ----- -----</p>
<p>제14조(사용허가 조건) 행정재산을 <u>사용허가</u>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생략) 7. <u>사용허가</u> 재산의 보존 의무 8. <u>사용허가</u>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p>제14조(사용·수익허가 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u>사용·수익허가</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현행과 같음) 7. <u>사용·수익허가</u> ----- 8. <u>사용·수익허가</u> -----
<p>제15조(사용허가부의 비치)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u>사용허가부</u>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p>	<p>제15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 ----- ----- <u>사용·수익허가부</u> ----- -----</p>

현행	개정안
<p>제19조의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생략)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생략)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p>제19조의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등)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현행과 같음)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현행과 같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잠중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생략) 4. 도지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히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현행과 같음) 4. <삭제>

현행	개정안
<p>5.(생략)</p> <p>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 4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p> <p>② ~ ③(생략)</p> <p>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p> <p>2. 인구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p> <p>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p> <p>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p> <p>5.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p>	<p>5.(현행과 같음)</p> <p>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p> <p>② ~ ③(현행과 같음)</p> <p>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잠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가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p> <p>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p> <p>③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p>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 ----- 1000분의 50이상 ----- ----- -----1000분의 25이상으로 -----.</p> <p>②----- ----- -----1000분의 10이상-----.</p> <p>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가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p>

현행	개정안
<p>1. <삭제 '90.11.10> 2. <삭제 '90.11.10> 3.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입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p> <p>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p> <p>1. ~ 2.(생략) ⑤(생략) 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료율 또는 대부료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p> <p>⑦ ~ ⑨(생략) <신설></p>	<p>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입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p> <p>④----- ----- 1000분의 40이상----- 1. ~ 2.(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⑥----- ----- -----1000분의 25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1000분의 10이상----- ⑦ ~ ⑨(현행과 같음) ⑩도지사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p> <p>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2.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p>

현행	개정안
<p>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생략)</p> <p>②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p> <p>③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가감조정 할 수 없다.</p>	<p>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 <p>③ <삭제></p>
<p>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 3.(생략)</p>	<p>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p> <p>----- -----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 ----- -----</p> <p>1. ~ 3.(현행과 같음)</p>
<p>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 6.(생략)</p> <p><신설></p>	<p>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 6.(현행과 같음)</p> <p>②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분은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신 설>		<p>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도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1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p>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p> <p>③ <삭제></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 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금)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p> <p>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초과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금) ①----- ----- ----- 하며,</p>

현행	개정안
<p>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 제1항제4호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p> <p>③(생략)</p> <p><신설></p> <p>제39조의2(수의계약 매각 범위등) ① ~ ②(생략)</p>	<p>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②도지사가 제23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p> <p>③(현행과 같음)</p> <p>제28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①연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9조의2(수의계약 매각 범위등) ① ~ ②(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이하까지 그 점용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p> <p>1. ~ 3.(생략)</p> <p>④(생략)</p> <p>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2.(생략)</p> <p>3.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 4.30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바닥건물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p>	<p>③----- ----- ----- -----하천법 제33조----- ----- ----- ----- ----- -----</p> <p>1. ~ 3.(현행과 같음)</p> <p>④(현행과 같음)</p> <p>⑤----- ----- -----</p> <p>1. ~ 2.(현행과 같음)</p> <p>3. ----- ----- ----- ----- ----- ----- (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 ----- ----- ----- -----</p>

현행	개정안
<p>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p>	<p>----- ----- <u>분할매각</u> -----</p>

관 계 법 령 발 체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건축법]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 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이하 "지방산업단지"라 한다)로 개발하고 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2 이상의 외국투자가 제1항 전단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투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시사항(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외국인투자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이를 개발·관리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된 경우로서 이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이 이를 관리한다.

⑤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공장 등의 설립을 위한 새로운 부지의 조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⑥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은 이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은 이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본다.

⑦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함에 있어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중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동법 제22조 제2항중 "국가산업단지 또는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⑧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점용"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

1. 유수(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의 사용
2. 토지의 점용
3. 하천부속물의 점용
4.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6. 토석·모래·자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7.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
8.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의 재식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의 운항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고, 제30조제6항·제7항 및 제31조의 규정은 제1항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지방재정법]**제109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②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의3 (중요재산·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손실보상
5.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8.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하되, 대학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종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종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공공청사(도서관 · 전시장 · 공연장 및 군사 시설중 군부대의 청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공공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소(연구소 및 연수시설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 (2)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 (4)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 ·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연수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공유재산의 종류)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1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재산을 말하며, 제1항제4호에서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③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손실보상 또는 환매
5.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8. 지방의회의결을 얻은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1.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제84조의2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①법 제8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관리위탁된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1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대부하는 때

제92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격결정은 사용·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산의 가격은 결정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토지와 경계를 접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필지로서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된 지가를 개별공시지가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면적으로 그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삭제

제100조 (대금납부와 연납)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
2. 전원개발·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하는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0조의3 (감중재산 등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은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제105조 (변상금)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의 회계연도별로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에 대한 특례) ①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 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자진반환 또는 제소전 화해의 경우에는 12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8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2. 제1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7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3. 항소 제기전의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8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6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6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5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5. 상고 제기전의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4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4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2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3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 ②제1항의 자진반환의 경우의 그 반환일은 반환하고자 하는 은닉재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